

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
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집행부 검토 의견

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.

의안번호 제2216호,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

「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
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」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동 건의안은

-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구조를 조성하고 도매
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농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서
- 그 동안 집행부가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 건의해 온
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건의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.
- 최근 시장도매인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고, 개설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
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안법 개정(안)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이번 시
의회의 농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, 공영도매
시장의 거래제도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

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